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63<sup>th</sup> December 2013

- ▶ WHERE IS GRACE CHANG?:  
성공이란?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 3
- ▶ FTA NEWS: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5
- ▶ VOICES FROM THE FIELDS:  
우리회사는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9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㉓  
..... 11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성공이란?



장승희  
대표 관세사

남성위주의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여 임원의 자리에까지 오른 여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WIN (Women in INnovation)이라는 단체입니다. “여성리더를 키우는 리더들의 모임”이라는 슬로건 하에 2007년 결성되었습니다. 지난달 WIN의 10번째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340여명의 멘티들과 60여명의 임원 멘토의 그룹 멘토링이 진행되었지요. 젊은 멘티들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노하우와,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환경적인 제약을 딛고 어떻게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하였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각자가 원하는 성공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공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다양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번달 Cover Story는 ‘분쟁광물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상장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에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FTA News는 2014년 발효를 예상하고 있는 한국-콜롬비아 FT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입니다. 또한 Voices From The Fields는 ‘관세법상 담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US Customs Valuation 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는 ‘특정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이지요. 연초의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즐겁게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한달 동안 끝까지 노력해야 하겠지요.

성공하기 위하여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고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2013년 고객 여러분 모두 연초의 목표를 너끈히 달성하시는 성공적인 한 해로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이길준 관세사  
(gi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전문

FTA News-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성기창 관세사  
(ksu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인천공항 지사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전문

Voices From The Fields-

우리회사는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김혜정 관세사  
(kimhj@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김포지사 파트장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컨설팅 전문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이동훈 관세사  
(d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자
- FTA 컨설팅

RULINGS

특정 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다소 명칭이 생소 할 수 있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 개 광물(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 3TG)을 말한다.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 개국이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아니라 광물 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2010년 7월 분쟁광물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고, 지난 2012년 8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후속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4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분쟁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광물은 휴대폰, 가전,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전자산업은 수많은 협력사와 위탁 제조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광물의 원산지 파악 및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제가 광물의 원산지 파악을 위한 실사와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규제에 대비한 미국 고객사들이 2012년부터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실사요구를 국내 기업들에게 요청함에 따라, 미국 고객사에게 우리 기업의 공급망 공개를 막기 위해 사적인 공급망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실사비용 부담 및 이를 감안한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미리 자사의 모든 공급망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EU, 캐나다, 호주 등의 입법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타국 수출기업도 분쟁광물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분쟁 광물 규제에 대해 OECD 나 IPC에서 마련한 실사 가이드를 참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표 참조]

OECD 실사가이드	IPC 실사가이드
<p>강력한 회사관리시스템 수립</p> <p>▶ 분쟁광물 공급망정책 채택/이행, 내부관리 시스템 구조화, 협력사 관계 강화</p>	<p>분쟁광물에 대한 회사 프로그램 구축</p> <p>▶ 대응조직 구성, 공식 회사정책 개발, Data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 평가절차 결정</p>
<p>공급망 내 위험 평가 및 식별</p> <p>▶ 상위회사 / 하위회사 위험평가범위 식별, 평가 실시</p>	<p>관련제품/공급업체 식별, 우선순위 결정</p> <p>▶ 3TG 함유 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 식별, 심층평가, 3TG 함유 자재/부품/제품의 위험도 기준 우선순위</p>
<p>위험식별 대응전략 이행 및 설계</p> <p>▶ 위험평가결과 작성, 위험관리계획 수립</p>	<p>공급망 위험요소 평가</p> <p>▶ 거래공급업체 조사방법/기법, 일정표에 따라 대응, 공급사들의 대응조치 확인</p>
<p>제련소 실사실행에 따른 제 3 자 독립감사</p> <p>▶ 제련소 실사실행, 독립적인 제 3 자 감사 계획/시행</p>	<p>분쟁광물 보고의무 이행</p> <p>▶ 공급사 조사결과 신뢰성/충분성, 평가 후 외부보고의무절차 이행, 정보공개 양식 결정</p>
<p>공급망 실사결과 연간 보고</p> <p>▶ 광물공급망 실사결과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CSR 연간보고서에 통합 보고</p>	<p>실사프로그램 관리(검토/수정)</p> <p>▶ 주기적 검토 및 평가절차 개선, 품질보증 시스템 관리와 목표 만족여부 결정, 조기경고 시스템 구축</p>

[표] OECD 와 IPC 공급망 실사가이드 비교(요약)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는 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 일 뿐이며,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자사에 적합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년간의 분쟁광물 사용유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기업에게 요구될 것이며, 유사 규제가 EU, 캐나다, 호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요 대응방향이 본 가이드를 통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고객사가 본 가이드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에게 요구할 정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자사가 생산한 제품에 해당광물이 사용되는 지를 파악하고 그 광물의 거래처 및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자사의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내부 영업 및 구매 담당자들과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분쟁광물규제에 대한 인식 증진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업계간 공동대응과 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분쟁광물규제 대응과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길 준

[gjlee@customsservice.co.kr](mailto:gjlee@customsservice.co.kr)

# FTA NEWS

##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1. 한-콜롬비아 FTA 협상 경과 및 추진 계획

2008년 7월 양국 외교장관회담 시 콜롬비아 측의 FTA 체결 검토 요청 이후 2009년 12월까지 총 7차례 공식협상 및 소규모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12년 6월 FTA 협상이 타결되어 2013년 2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추후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협정 발효를 추진 예정인 바 2014년 중에는 한-콜롬비아 FTA가 정식으로 발효가 될 것이라 예상 된다. 따라서 추후 발효될 한-콜롬비아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진다.

### 2.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 1) 관세 완전 철폐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10년 내 교역 중인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은 82%, 콜롬비아는 6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보호 수단을 확보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은 양허에서 제외 된 상태이다.

#### 2) 주요 수출 품목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수출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53.5%를 차지 하고 있다.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는 모두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며 자동차의 경우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EU 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對 콜롬비아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1	승용차	462	20.6	469	1.6	31.9
2	자동차부품	369	2.5	221	-40	15.1
3	합성수지	104	46.7	96	-7.7	6.5
4	화물자동차	64	26.6	52	-19.3	3.5
5	기타석유화학제품	47	41.7	44	-5.3	3
6	타이어	44	50.7	44	1.1	3
7	건설중장비	29	-9.2	41	41.3	2.8
8	원동기	52	3.3	40	-23.7	2.7
9	섬유기계	24	92.7	34	40	2.3
10	컴퓨터	20	-0.5	21	3.8	1.4
<b>합계</b>		1614	16.2	1468	-9	100

**3) 특혜세율 적용**

FTA 세율이 콜롬비아 최혜국 대우(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 FTA 특혜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MFN-0.5% p) 적용된다. (예: MFN 관세율 5% / FTA 기준세율 10%인 경우 4.5%(5%-0.5%) 적용) 이러한 특혜세율의 경우 미국, EU와의 FTA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콜롬비아 FTA가 미국, EU에 비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3. 한-콜롬비아 FTA 대비**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3번째로 체결한 FTA이며 칠레, 페루와의 FTA와 비교하여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효과 창출이 가능한 FTA라 예상되고 있다. 다만, 양국 교역 품목 구성이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기에 단기간에 획기적인 교역 구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이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3위(현대), 4위(기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콜롬비아 FTA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따른 원산지 확인서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콜롬비아 FTA에 대비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재 검토 및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확인서 등의 작성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성기창

[kcsung@customsservice.co.kr](mailto:kcsung@customsservice.co.kr)

# Voices From The Fields

## 우리회사는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관세법상 담보제공생략 대상 및 담보제공특례자

### 1. 개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등 세관관리하의 장소에서 반출되어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당국에서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납부기한내에 제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세당국에서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010년 7월에 관세담보제도가 개정되면서 많은 경우 담보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업체들의 경우 월별납부제도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담보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고, 신규업체의 경우에도 담보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이하 본문에서는 관세의 담보제도의 종류와, 담보제공생략 대상자 및 담보제공특례자의 요건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담보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 2. 관세의 담보제도

2010년 7월 담보제도의 개정으로, 법 위반자, 체납자, 일정기준 신용등급 미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시 담보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관세법상 신용담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용담보 요건을 완화한 제도인 담보제공특례자에 대한 담보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이 더욱 경감되었습니다. (환특법에 의한 신용담보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됨)

기존의 사전납부, 월별납부 제도등의 관세납부제도와 포괄담보 및 개별담보등의 담보종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3. 담보제공 특례자

#### 1) 지정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의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제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①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② 최근 2 년간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③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함.

-3 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최근 2 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 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 2)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수입화주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 3)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 등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을 받거나 담보제공 특례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확인 또는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5)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갱신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기간 만료 1 월전까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기간갱신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월별납부 업체의 담보제공

1) 의의: 많은 양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납부의 편의를 위해 많은 업체들이 월별납부를 활용합니다. 월별납부의 경우는 수입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월별납부에서의 담보제공

월별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제공생략대상자의 경우는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담보제도가 궁금하시거나, 담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하실 때는 신한관세법인에 문의하여 보시고, 수입통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정

[kimhj@customsservice.co.kr](mailto:kimhj@customsservice.c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정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數)의 20 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세 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보세 판매장 총 특허 수의 60 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에 대한 적용 예외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 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 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세판매장을 포함한 특허보세 구역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연면적 기준으로 매 분기당 7만 2천원부터 51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세판매장의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 68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8 조의 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 176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 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 68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 10 조의 2 에 따른 중견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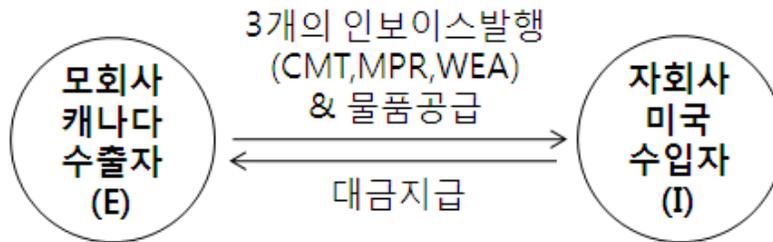
###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 68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dhlee@customsservice.co.kr](mailto:dhlee@customsservice.co.kr))

## 특정 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HQ 547108 2000.03.28)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 □ 거래사실(Facts)

1. 캐나다의 E(수출자)의 자회사 I(수입자)는 E로부터 남성의류(이하 "제품")를 수입하여 미국 내 판매함.
2. I는 수입신고서 상의 수입자이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3. E는 I에 대하여 3가지 타입의 송장을 발행함.  
미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 I는 CMT와 MPR의 총 금액과 WEA의 일부가 포함된 금액을 신고 함.  
3가지의 송장이란 다음과 같음.

가. CMT 송장: 자르기(Cut), 만들기(Make), 다듬기(Trim)  
이 송장은 의류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생산비용을 나타냄. 이는 직, 간접적인 인건비임.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나. MPR 송장 : 재료 구입 비용(Material Purchase Recovery)  
E는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원단을 구매함. 이 원단은 I에게 판매되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이전에 I가 원단의 소유자가 됨. 이 송장은 I에 대한 원단의 판매 금액임

다. WEA 송장: 보관 및 일반 비용의 배분  
(Warehousing and Expense Allocation)  
이 송장은 보관 및 일반적인 경영상의 비용임.  
WEA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됨.

- (1) 보관비(Warehousing)-생산에 사용될 원단의 보관 비용 및 생산 전 미국으로의 선적 대기 시 보관 비용
- (2) 경영자 인건비(Management Salaries)-몬트리올에 있는 E 의 관리자에 대한 봉급
- (3) 입력 직원 인건비(Data Entry Salaries)-몬트리올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비용과 관련된 자료 투입 비용
- (4)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Office Salaries and Supplies)-E 의 직원 고용 및 지원 비용
- (5) 컴퓨터 공급 비(Computer Supplies)-몬트리올에서의 컴퓨터와 그 공급 비용
- (6) 전화비(Telephone)-몬트리올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하는 전화비용
- (7) 구매 직원 급여(Buying Salaries)-E 의 직원들이 원단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봉급
- (8) 트럭 대여비(Shipping Truck Rental)-제품을 I 창고로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 (9) 선적 소요 인건비(Shipping Salaries)-물품을 싣기 위한 선적, 포장 등 작업에 소요되는 보수
- (10) 판매 비(Selling Expenses)-소비자들의 주문 전화에 대한 수신자 부담 전화 비용
- (11) 기타 판매비(Traveling and Selling Expenses)-몬트리올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다른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 비용

4. I 는 CMT 와 MPR 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나타낸다고 하며 WEA 송장은 물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 쟁점(Issue)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WEA 중 어떠한 항목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 근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임. (미국 관세법 19 U.S.C 1401(a))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으로, 직·간접여부를 불문하나, 운송, 보험, 선적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외. 따라서 우선은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임.

#####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Generra Sportswear Co. 판례 (1990)

수입자가 수출자에 지급한 모든 비용들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될 수 있음. "total pay ment"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제품의 본래 가격에 더하여 다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음. 거래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입증은 수입자가 하여야 함.

나. Moss Mfg 판례 (1990)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 수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따진다면, 이는 엄청난 양의 일이 될 것이므로, 거래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입증은 수입자가 하되, 일단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들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 Chrysler Corporation 판례 (1993)

- 국제무역법원(CIT)는 거래와 독립적이거나 수입제품과 관련 없는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 비용의 지급은 수입량 등에 따라 배분되어 이루어질 수 있음. 이 사건에서는 수입되는 엔진(수입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소요된 기계 비용을 배분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 (예: 생산지원비용을 수입량에 대해 배분하는 경우 )

라. HRL 544758 (1992. 02. 21)

수입자가 특수 관계가 아닌 수출자에게 참고료를 지불한 경우, 이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었음.

마. HRL 545663 (1995. 07. 14)

제품의 제조 전, 제조자와 특수 관계인 참고 소유자에게 지불한 참고료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였음.

##### 3. 쟁점 검토

- WEA 송장에 포함된 금액 중 트럭 대여비, 판매비, 기타 판매비{FACTS 3. 다 (8),(10),(11) 항목}는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은 쟁점 검토되지 않음.

- 쟁점 사안에서 WEA 송장에 대해 I 가 E 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송장 상의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수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면 실제지급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

- 보관비, 선적 소요 인건비,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 구매 직원 급여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음

## 입증하기 어려움

### (1) 선적 소요 인건비

선적 비용은 포장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포장 비용이란 어떤 물건이든 선적에 적합하도록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는 비용임.

관세법 19 U.S.C 1401(a)에 따르면 포장비용이 이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가산 금액에 포함한다고 함.

관세청은 수입자가 금액의 배분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전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만 하나, 이 사안에서는 선적 보수의 50%를 선적 하는 데에 배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만큼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함.

### (2) 보관비

보관비와 관련하여, 물품 생산 전 보관 비용은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로 봄.

쟁점 사안에서 제조 전 원단의 보관과 선적 전 제품의 보관은 제품의 수입과 관련됨. 그리고 이 비용은 수입자에 의해 수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총 창고 보관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3)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등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용,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 구매직원 급여는 수입제품과 관련됨. I 측의 관리자 및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에는 E 가 아닌 I 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나타냄.

### (가) 경영자 급여

5 명의 관리자는 몬트리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모회사의 전략기획을 맡았음. 이들은 의류의 새로운 디자인, 소비자 요구 충족, 원단 품질 향상, 고객에 적기 배송 등에 대하여 회의하였음. 이들의 봉급은 미국에서의 판매량에 기초하였음. 회계 관리를 하기도 하고, 캐나다에 2,500 명이 넘는 직원의 관리를 위해 예산 집행을 하기도 함

(나)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등 몬트리올에서의 컴퓨터 비용 및 컴퓨터 관련 자료 입력 인건비, E 회사 직원의 봉급과 각종 지원 비용,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에 대하여 I 는 96% 이상이 미국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I 와 관련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 역시 판매 지원 시설이므로 배분 비율을

따져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마땅함.

### (다) 구매직원 급여

I 는 원단의 구매 활동이 원단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그러나 원단은 E 가 구매한 후 I 에 재판매 되며,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용이하기 위한 것임. 이 역시 배분 비율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 배분 비율은 E 의 생산 관련 비용과 I 의 판매 관련 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함.

쟁점 사안에서 E 가 인력, 시설,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E 와 I 의 비용 부담을 9.2 : 1 로 결정함. 즉, 92.2%의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와 구매 직원 급여는 수입되는 옷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본래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없으나, 단지 특수 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활용 가능함.

- 본 사안의 경우 CMT, MPR, WEA 이 세가지 송장 금액이 모두 감안된 가격은, 이익 금액에 기타 모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마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 처럼 거래하였음.

일반적인 상거래 상 가격 결정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 결정(Holding)

1.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특수관계자인 두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은 3 개의 송장(CMT 전체 금액, MPR 전체 금액 및 WEA 금액 중 일부)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

2. E 와 I 의 특수관계가 거래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가 가능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